# 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선 | 기 관 의 장 |
|---|---------|
|   |         |
| 람 |         |
| " |         |



제623호 2024. 2. 23.(금)

## 입 법 예 고

# 고 시

고성군 고시 제2024-3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...... 12

# 공 고

| -1 |  |  |  |  |  |
|----|--|--|--|--|--|
| 호  |  |  |  |  |  |
| _  |  |  |  |  |  |
|    |  |  |  |  |  |
| 람  |  |  |  |  |  |
|    |  |  |  |  |  |
|    |  |  |  |  |  |
| 1  |  |  |  |  |  |

발행: 고성군, 편집: 인구청년추진단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4-349호

### 고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. 2. 23. 고 성 군 수

#### 1. 폐지이유

아동·여성 관련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대상자별 구분되어 제정·시행되고 있어 고 성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「고성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」를 폐지함

#### 3. 의견 제출

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복지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

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복지지원과
- 2) 전화: (055)670-2382, 팩스: (055)670-2609

####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청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(☎055-670-238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아동 ·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| □ 자치법규명: 고성군  | 아동·여성안전   | 지역연대 | 운영조례 | 폐지조례안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○ 성명(단체명):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0 주 소: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○ 전화번호: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○ 의견 내용(찬·반 의 | 비견과 그 이유) |      |      |       |

| 폐지안 | 찬반 | 의견       | 스저아 | 수정사유 |  |
|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--|--|
| 베시안 | 찬성 | 성 반대 수정안 |     | ተማሳπ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|  |

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4-1호

###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23. 고 성 군 수

#### 1. 개정이유

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 확대 및 제외 대상 추가(안 제2조)

- 1) 지원 대상 확대
- "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"
  - : 65세 이상 군민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 → 65세 이상 군민
  - 2) 지원 제외 대상 추가
    - "「국적법」에 따른 외국인"
  - 나. 접종종류 삭제(안 제3조)
  - 다. 지원 횟수 포함 및 제목 개정(안 제4조)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보건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관・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####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담당

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-3, 보건행정과
- 2) 전화: (055)670-4091, 팩스: (055)670-4019

####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담당 [전화: (055)670-4091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군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"를 "군민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"을 "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국적법」에 따른 외국인
- 2.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전액"을 "1회에 한하여 전액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"공동이용 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"을 "공동이용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대상 경과조치) 제1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ㆍ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지원대상) ① 대상포진 예      | 제2조(지원대상) ①                |
| 방접종(이하"예방접종"이라 한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)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거주하는 65세 이상 <u>군민 중</u> | <u>군민으</u>                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.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예방접</u> | ② <u>다음 각</u>              |
| 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       |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               |
|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1. 「국적법」에 따른 외국인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2.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조(접종종류 및 횟수) 예방접   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|
| 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생백신이고, 횟수는 1회에 한해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한다.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지원 금액) ① 고성군수(이     | 제4조( <u>지원 금액 및 횟수</u> ) ① |
| 하 "군수"라 한다)는 예산의 범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을 <u>전액</u> 지원할 수 있다.   | 1회에 한하여 전액                 |
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신청 및 지원절차) ① (생     | 제5조(신청 및 지원절차) ① (현행 |
| 략)                      | 과 같음)                |
| ② 군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       | ②                    |
|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<u>공</u> | <u>공</u>             |
| 동이용 또는 「사회보장기본          | 동이용                  |
| 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u>보장정보시스템</u> 을 통하여 지원 |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다만,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      | ,                    |
|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
  - 성명(단체명):
  - 주 소:
  - 전화번호:
 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개정안 찬반의견 |    | 스러아 | ᄼᅯᆡᅌ  |  |
|----------|----|-----|-------|--|
| 찬성       | 반대 |     | 수정사유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      |  |
|          |    |     | 두 전 아 |  |

고성군 고시 제2024-33호

##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2. 21. 고 성 군 수

##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<br>효력발생일 | 도로명주소<br>부여사유 | 도로명 부여사유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|       | (별지            | 참조)           |          |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

| 변경 전  | 변경 후  | 도로명주소   | 변경사유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
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| 효력발생일   |      |
|       | ( j   | <b></b> |      |

#### ○ 도로명주소 폐지

| 도로명주소 | 폐지고시일  | 폐지사유 |
|-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 | (별지참조) |      |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됩니다.

| $\bigcirc$ | 도로명주소 | 변경 | 등 |
|------------|-------|----|---|
| $\sim$     |       |    | _ |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

| 연<br>번 | 종전주소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| 도로명주소<br>고시일  | 도로명주소<br>부여사유 | 도로명 부여사유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    | 거류면 감서리 505 | 거류면 거류로 871-28 | 2024. 02. 21. | 건물번호부여신청      | 행정구역명(거류면)을<br>이용하여 거류로로 명명 |    |

고성군 공고 제2024 - 348호

##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

- 1. 고성군 행정구역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안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제29조제3항에따라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
- 2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.

2024. 2. 23. 고 성 군 수

- 1.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목적
- 고성군 행정구역 전체의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 및 전략환경영향평 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- 2.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
- O 일시: 2024. 3. 8.(금), 15:00 ~
- 장소: 고성읍사무소 대회의실(3층)
- 3.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고성군관리계획(재정비) 개요
- O 계획의 개요
- O 고성군 장기발전구상
- O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
- O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 수렴
-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(☎055-670-256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